

제7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42조(일반원칙) ①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융투자상품을 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가 발행한 증권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
3. 회사 이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본 장의 규정은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거래의 명의를 불문하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특정증권등에 대한 임직원의 투자는 “매수 후 보유(buy and hold)”의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적인 매매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회사 임직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다른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포함)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법에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다른 해당 상장법인의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① 임직원은 회사의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분기별 공시가 이루어진 날(분기별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공시일을 의미함)로부터 2일째 되는 날로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이하 “거래허용기간”이라 한다)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 5월 14일에 회사의 1분기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가 제출된 경우 임직원은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경영관리본부장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가적인 거래허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이를 이메일 송부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서면 고지한다.

② 임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본 조에서 “특정 임직원”이라 하며, 경영관리본부장은 아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부서 및 직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지정할 수 있

음)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위 제1항의 거래허용기간 중에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예정 거래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전에 경영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 임직원은 위 통보와 함께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에서 법 제1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회사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3. 그 밖에 회사의 경영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직원
- ③ 전항의 통보를 받은 경영관리본부장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특정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본부장은 거래허용기간 중에도 임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관리본부장은 해당 금지 사실을 이메일 송부 등의 방법으로 대상 임직원에게 사전에 서면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임직원은 경영관리본부장으로부터 위 금지가 해제되었다는 별도의 고지를 받기 전에는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없다.
- ⑤ 위 제1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경제적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경영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거래허용기간 외의 기간(위 제4항에 따라 설정된 금지기간을 포함)에도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서면으로 경제적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를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소명하고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본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매수의 방법으로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제4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는 본 제43조를 포함한 본 규정이 적용된다.
- ⑦ 특정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경영관리본부장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수량 및 조건, 누적보유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괴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①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②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